

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6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

(1) 회계관계공무원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안 제1조)

(2) 회계관계공무원중 제2조제3호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으로 하고, 제10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1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본문생략) 1. ~ 2. (생략) 3.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u>보험업법 제5조</u>의 규정에 의하여 <u>재정경제부장관</u>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u>95조</u> -----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보험업법</u>」 제4조 ----- -----<u>금융감독위원회</u>----- ----- -----.